

주식회사 팜스코 기업지배구조헌장



전문

주식회사 팜스코(이하 "회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산식품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축산식품산업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앞장서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축산식품 산업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에게는 글로벌 생산성 제공으로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축산식품 구매 고객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을 제공하여 축산식품산업에 관계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한다.

회사는 고객과 축산식품 관계자, 주주 그리고 구성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신뢰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본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한다.

제1장 주주

제1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정관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 되어야 한다.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 ③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이사회

제4조 [이사의 기능]

- ①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 ② 이사회는 법령,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산하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이사의 구성]

-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하며,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에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3명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이어야 한다.
- ③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 [이사의 운영]

- ①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 ②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한다.
- ③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유지·보관한다.
-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 ⑤ 이사는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적정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사외이사 자격 역할 권한]

-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과반이 포함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
- ③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사외이사는 필요 시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제9조 [이사의 의무 및 책임]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이사는 직무수행으로 얻어진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이사가 경영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이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⑤ 회사는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장 감사기구

제10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중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운영규정을 근거로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적법성 검사, 회사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사, 재무보고 과정의 적정성과 재무보고 의 정확성 검토, 외부감사인 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 등을 수행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 담당 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 등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11조 [외부감사인]

- ①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되며,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이해관계자

제12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 ① 회사는 고객과 임직원, 채권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 ③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 ④ 회사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제5장 공시

제13조 [공시]

-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부칙

1. 이 헌장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